

특임교수 임용 규정

제정 2025. 9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에서 특수한 필요에 의하여 초빙하는 특임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특임교수는 권위있는 공공기관,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각 분야에서 근무한 자로 대학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연구, 강의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) 특임교수는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정부 차관급 이상 지위를 가진 자
2.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장
3.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
4.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적이 뛰어난 자
5. 국가산업기관(공공기관 포함) 또는 기업체의 CEO나 전문·실무경력이 뛰어난 자
6. 기타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

제4조(임용절차) ① 특임교수의 임용은 총장이나 소속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② 특임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의 추천서, 이력서, 학문적 또는 사회적 업적개요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(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)

③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사람은 재추천 할 수 없다. 다만, 추천자가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.

제5조(임기 등) ① 특임교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정할 수 있으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

② 계약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재계약이 없는 한 당연 면직된다.

제6조(처우) ① 특임교수에 대한 처우는 무보수,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 그 외에 조건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되, 이외의 사항은 임용조건에 따른다.

1. 대학(원) 강의 및 연구
2. 특별 강연 및 세미나
3. 총장이 부여한 특별 업무
4.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이나 외부 연구과제 수주 등
5.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등

제7조(면직) 특임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제6조(처우) 제②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3. 관계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
4. 대학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5. 기타 특별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160, 2025. 09. 23.)

이 규정은 202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특임교수 추천서

인적 사항	성 명		생년월일	
			연 락 처	
	주 소			
추천 내용				

이에 따라 특임교수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자 : (인)

소 속 :

상지대학교총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이 력 서

※ 인적사항

소 속						사진부착 (최근 3개월 이내 촬영)
성 명	(한글)	(한자)	(영문)			
주민등록번호						
연락처	주 소	(우편번호 :)				
	전화번호		휴대폰		E-mail	

※ 학력사항

학위	재학기간	학교명	학과명	전 공	학위명	학위수여일
학사	~					
석사	~					
박사	~					

※ 포상경력

구 분	명 칭	수여년도	증서번호	시행청	비 고

※ 자격 및 면허사항

취 득 년 월 일	종 별	시 행 기 관

* 자격증 및 각종 면허(운전면허제외)를 작성하시되, 작성한 사항은 반드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강의 경력사항

근무기간	근무년월	대학명	직급	담당과목(담당시간)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
* 시간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 등 으로 강의한 경력 ☞ 기재한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첨부

※ 산업체 및 기관 경력사항_기재한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첨부

근무기간	근무년월	기관명	부서명	직 위(담 당)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. . ~ . .	년 월			

※ 주요 업적(학문적 또는 사회적 업적)

위 기록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작 성 자 : (인)

상지대학교 총장 귀하